- (22) 외벽을 해체할 때에는 비계 등의 가시설물 철거 작업자와 서로 긴밀히 연락 하여야 하며, 벽과 연결된 비계 등 가시설물은 외벽해체 직전에 철거하여야 한다.
- (23)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5.2 해체공법별 안전작업

해체작업 시에는 해체공법 특성과 이 지침의 "4. 해체공사 전 확인사항" 및 "5.1 안전일반"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5.2.1 압쇄기에 의한 해체작업

유압식 파워쇼벨에 압쇄기를 부착하여 콘크리트 등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압쇄기의 중량, 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 부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 (2) 압쇄기 부착과 제거에는 경험이 많은 자를 선임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 (3)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윤활유를 칠해주는 등 보수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 (4) 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구조부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5) 압쇄기의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적기에 교환하여야 한다.
- (6) 이 작업은 대형 압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압쇄기가 설치되는 지반 또는 구조물 슬래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침하로 인한 중기의 넘어짐 방지 또는 무너짐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토록 조치하여야 한다.